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태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323,975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7.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7. 8. 4. 접수 제310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C, D는 부자지간으로, 각각 ‘E’, ‘F’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 C, D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물품대금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피고 C, D는 2018. 2. 21.경 그 외상대금 잔액이 567,873,438원임을 확인하는 ‘외상미수금 잔액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2017. 4. 7. 기준 외상대금 잔액이 547,241,902원이었다가 2017. 4. 8.부터 2017. 12. 31.까지 466,209,600원 상당의 공급과 460,870,228원의 결제가 이루어져 외상대금 잔액이 552,581,274원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C은 1993.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2017. 7.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7. 8. 4. 접수 제31039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위 외상대금 잔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2021. 3. 16.을 기준으로 207,323,975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외상 물품대금 207,323,975원 및 이에 대한 위 외상대금 기준일의 다음날인 2021.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수분양자로서 그 분양대금을 부담하는 등 원래부터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데, 피고 C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 수단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5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인정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9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C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양도한 행위는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는 반면,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윤지영, 판사 박진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84.5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대10720㎡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소유권, 10720분의 27.4995 끝.

